

공학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8. 08. 25.
제4차 개정 2018. 0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부설 공학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 방향 설정을 위한 업무
2. 창의적인 공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3. 공학교육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개발
4. 학생진로 및 학업이수계획 지도방안 개발
5. 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과정 평가 등 평가방법 연구
6. 사이버 공학교육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교육매체 전달수단 개발
7.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개정 2010.4.6)

제3조(조직기능) (조 삭제 2010.4.6)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에는 프로그램별 PD(Program Director),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PD는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속한 전임교원 중에서 한명을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인증프로그램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센터에는 인증평가업무지원실, 교육과정개발실, 교육평가개발실, 연구·기획실을 둘 수 있다.

(조 신설 2010.4.6)

제5조(직무) 센터의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증평가업무지원실 : 연구결과 배포, 인증유지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공학인증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인증업무 지원, 학생 및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개발실 :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설정,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자문,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공학의 소개와 이해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평가개발실 :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평가, 강의평가, 졸업생평가, 교육과정평가 등의 평가방법론 연구, 평가 시행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기획실 : 공학교육인증 및 혁신에 관련된 연구 및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각 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4.6)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공과대학장과 보건과학대학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규정 및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⑥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공학교육인증

제8조(공학교육인증) 공학교육의 인증을 위한 교과, 수업, 편입학 및 졸업은 공학교육인증을 목표로 하는 학과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이수학점) 공학교육의 인증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학점은 공학인증원(ABEEK)에서 요구하는 교과영역별 최소 학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2.11.16)

1. MSC(수학, 기초과학, 전산학)교과목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전산학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하고 컴퓨터공학 분야 프로그램은 전산학을 포함할 수 없다.
 2. 공학주제 교과목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과정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3학점 이상으로 한다.
- (각 호 신설 2012.11.16.) (개정 2016.12.15.)

제10조(인증자격) 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성취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② 학생의 인증자격 기준 달성을 여부는 학부(학과) 또는 전공단위의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판정한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학과) 또는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③ (졸업요건)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양, MSC, 전공교과에 대하여 각각 규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대상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학습 성과에 관련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항 신설 2012.11.16)

④ (졸업사정)

1. 각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2. 졸업사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항 신설 2012.11.16)

제11조(전입생) 전입생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12.11.16)

제12조(운영세칙) 공학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5.24.)

제4장 재정

(장 신설 2010.4.6)

제13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
2. 정부 및 대학의 보조금

3. 기타 기부금 및 수입
(조 신설 2010.4.6)

제14조(회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하며,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 신설 2010.4.6)

부칙 (기획예산과-923호, 2008.8.26)

이 규정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80, 2010.4.6)

이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44, 2012.11.16)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51, 2016.12.15)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3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81, 2018.05.24)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